

예산총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7,035,076	20,311,052
일반회계	665,858,828	19,975,765
특별회계	11,176,248	335,287
기타특별회계	11,176,248	335,28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5,200	456
주차장 특별회계	10,028,025	300,84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58,148	16,744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483,000	14,49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8,975	2,669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900	8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32,15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 등 이전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

※ 예산서 자원 표기

[국] 국고보조금, [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금보조금

[특] 특별교부세, [별] 특별조정교부금, [시] 시비보조금, [구] 자체자원